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현행 등기소별로 신청사건에 대하여 부여한 접수번호를 전국 등기소를 기준으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될 것임에 따라 통합접수번호 부여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
- 전국통합접수번호의 정의와 부여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접수번호표의 양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5.가.(1)부터 (4)까지 신설)
- 대법원등기예규 제1348호의 내용을 예규에 반영함(안 5.라.(1))
-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 사건을 접수한 때에 부동산등기신청접수장에 그 취지를 기재함(안 6.나. 신설)

3.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불임과 같음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1.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와 「상업등기법」 제3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접수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제2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 본문 중 “전자신청 등기소장은”을 “등기과소장은”으로 한다.

4.나.의 제목 “e-Form신청의 권장”을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이하 ‘e-Form신청’이라 함)의 권장”으로 하고, 본문 중 “전자신청 등기소장은”을 “등기과소장은”으로 한다.

5.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접수번호의 부여 및 구성 등

5.가.에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접수번호는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제2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국 등기소를 기준으로 부여(이하 ‘전국통합접수번호’라 함)하고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2) 전국통합접수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와 「상업등기법」 제3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국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3) 「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제1항의 접수번호표는 등지구분, 전국통합접수번호, 등기목적, 접수일시, 신청유형, 접수등기소, 배당계, 등기소별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4) 「상업등기규칙」 제65조제1항의 접수번호표는 등지구분, 전국통합접수번호, 상호, 접수일시, 신청유형, 배당계, 등기소별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5.나.의 제목 “일반신청”을 “방문신청(e-Form신청은 제외)”로 한다.

5.다.(1) 본문 중 “신청정보를 입력한다. e-Form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이는 방법은 일반신청과 같다.”를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e-Form신청서에 5.나.(1)의 방법으로 접수번호표를 붙인다.”로 한다.

5.라.(1)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예: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가압류 신청보다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동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와 가압류등기 촉탁서를 등기관이 동시에 받은 경우)

6. 제목 외 부분을 가.로 하고, 6.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 각 법률에 따른 신청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대법원등기예규 제1348호 등기신청의 동시접수를 폐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목적 <u>이 예규는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의 접수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1. 목적 <u>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와 「상업등기법」 제3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접수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제2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2. 접수창구의 복수화 가. <u>전자신청 등기소장은</u>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하여 접수창구를 다음 각 호의 창구로 복수화 할 수 있다. (1) · (2) (생략) 나. (생략)	2. 접수창구의 복수화 가. <u>등기과·소장은</u> ----- ----- ----- -----. (1) ·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4.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다량 또는 대량사건을 즉시접수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 접수의 조기화 (생략) 나. <u>e-Form신청의 권장</u> <u>전자신청 등기소장은</u> 법무사 등	4.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다량 또는 대량사건을 즉시접수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 접수의 조기화 (현행과 동일) 나. <u>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이하 ‘e-Form신청’이라 함)의 권장</u> <u>등기과·소장은</u> -----

이 10개 이상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을 하거나 10건 이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e-Form신청을 하도록 권고 또는 지도하여 접수창구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접수

가.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접수담당자가 별도로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신 설>

<신 설>

<신 설>

-----.

5. 접수

가. 접수번호의 부여 및 구성 등

(1) 접수번호는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제2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국 등기소를 기준으로 부여(이하 ‘전국통합접수번호’라 함)하고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2) 전국통합접수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와 「상업등기법」 제3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국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3) 「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제

<신 설>

나. 일반신청

(1) ~ (4) (생 략)

다. e-Form신청

(1) e-Form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e-Form신청서의 신청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리더기를 사용하여 신청서의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읽는 방법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다. e-Form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이는 방법은 일반신청과 같다.

라. 촉탁서가 동시에 등기소에 도착한 경우의 접수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촉탁서가 등기소에 동시에 도착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의 접수번호를 각각의 촉

1항의 접수번호표는 등기구분, 전국통합접수번호, 등기목적, 접수일시, 신청유형, 접수등기소, 배당계, 등기소별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4) 「상업등기규칙」 제65조제1항의 접수번호표는 등기구분, 전국통합접수번호, 상호, 접수일시, 신청유형, 배당계, 등기소별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나. 방문신청(e-Form신청은 제외)

(1) ~ (4) (현행과 동일)

다. e-Form신청

(1) -----

-----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e-Form신청서에 5.나.(1)의 방법으로 접수번호표를 붙인다.

라. 촉탁서가 동시에 등기소에 도착한 경우의 접수

(1) -----

탁서에 부여한다. <후단 신설> 6. 접수장 기록 전자신청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접수장에 전자신청 사 건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 (예: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가압류 신청보다 신 청법원에 먼저 접수되었으나 법원 으로부터 동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 탁서와 가압류등기 촉탁서를 등기 관이 동시에 받은 경우) 6. 접수장 기록 가. 전자신청 사건을 접수한 때에 는 등기신청서접수장에 전자신청 사건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 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사건을 접수 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 장에 각 법률에 따른 신청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640